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실태 분석

: 2011년 신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중심으로

조 성 은(가족친화지원센터) · 안 재 희(가족친화지원센터) · 김 지 수(가족친화지원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의 ‘출산, 양육 및 자녀교육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수준을 조사하고, 기업(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제도를 발굴 및 확산하고자 하며, 법적기준¹⁾ 이상 제공되는 내용과 운영 규정 등을 파악하여 향후 가족친화제도 수준을 높이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2011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총 95개 신규 가족친화인증 기업(관)이며, 이들이 인증 신청 당시 제출한 가족친화인증 신청 운영현황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 내용은 기업(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였으므로 실제 현장 심사시 기업(관)이 제출한 추가 자료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가족친화인증에서 다루어지는 가족친화제도 영역은 총 9가지²⁾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관)의 일차적인 관심 영역이면서도 법적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제도’, ‘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영역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가족친화인증 제도 현황 수준 파악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즉 규정화된 관련 프로그램 수(0개/1개/2개/3개 이상), 프로그램 활용실적(20%/40%/60%/80% 이상), 개선을 위한 점검(프로그램 점검 여부/개선 노력 여부)을 분석하였다. 또한 법적기준 이상 제공되는 제도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사산 휴가, 태아검진 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육아시간보장(수유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그 외 기업(관)의 자체 운영제도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도입-활용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추가지원(공공 50% > 대기업 27.8% > 중소기업 22.2%), 태아검진휴가 추가지원(공공 86.6% > 중소기업 6.7%), 배우자 출산휴가 추가지원(공공 77.8% > 중소기업 14.8% > 대기업 7.4%)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중소기업 도입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제도 도입-활용에 있어 공공기관의 주도와는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중소기업 41.7%, 대기업 33.3%, 공공 25% 순으로 나타나 향후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기 도입된 출산 및 양육 프로그램의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인증심사에 따라 규정화된 관련 프로그램 수가 3개 이상 67.2%, 2개 20.8%, 1개 9.9%인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의 80%이상을 활용했다는 곳이 71.4%로 높게 나타나 각 기업별 도입 가능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가족친화제도 마련과 함께 제도 활용, 즉 실제 기업(관)에서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에 대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정기적 안내, 중간 관리자를 통한 직원들 대상으로 제도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직원들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필요하다. 해당 기업에 적합한 가족친화제도 아이디어 공모나 나아가 가족친화 경영 제안 콘테스트를 통해 노사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면 보다 다양하면서도 활용가능한 제도들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족친화 경영=비용’으로 보는 시각에서 저예산, 비예산으로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관)의 사례를 적극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족친화경영을 보다 폭넓게 접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

2) ①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②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③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④탄력적 근무시간, ⑤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⑥가족간호 및 가족건강지원, ⑦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⑧결혼장려 및 가족 경조사 지원, ⑨가족친화 사회공헌